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허가 등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호, 2023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28”을 “1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27”을 “128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41”을 “42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128”을 “129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27”을 “128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41”을 “42”로 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• <u>128</u>	• <u>129</u>	+1
일반직 계	• • <u>127</u>	• • <u>128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 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 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연구관	<u>41</u>	<u>4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128</u>	• <u>129</u>	+1
일반직 계	• • <u>127</u>	• • <u>128</u>	+1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 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 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연구관	• • <u>41</u>	• • <u>42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